

## ●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5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)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13일

제주전파관리소장

### 전파법 위반(정기검사 불응)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

#### 1. 대상 무선국

시설자명	허가번호	무선국명	호출명칭	주 소
김*복	42-2021-80 -0000002	제703금영호	990금영호	서귀포시 홍중로 **7
유*철	42-2013-80 -0000011	유성호	997유성호	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**6, *층
제주 요**어 주식회사	41-2015-80 -0000011	돈파파 (DONPAPA) 호	900DONPA PA호	제주시 도두항길 **--
김*진	42-2017-80 -0000131	경진호	928경진호	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1**-1, 1**동 10*호
양*필	42-2019-80 -0000127	동명1호	983동명호	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**-8

#### 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

전파법 제72조제2항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#### 3. 위반사항: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

#### 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운용정지 2월

#### 5. 청문일시: 2026. 3. 10. (화) 15 : 00

#### 6. 청문장소: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(2층)

#### 7. 참고사항

- 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 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(☎064-740-2812, FAX 064-740-28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